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108422(본소), 2020가합102888(반소) 판결
[공사대금 · 공동원가분담금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10864(본소), 2022나10871(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10842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우종현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한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변론 종결2021. 12. 16.

판결 선고2022. 1.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회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17,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10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605,848,297원임을 확정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413,417,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B과 주식회사 D(이하 'D') E 3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5.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라. 구성원은 하기와 같이 지분율을 나누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지분율	50%	50%	
-----	-----	-----	--

나. 원고는 2017. 10. 1. B과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0. 1.부터 2018. 1. 5.까지, 공사금액 4,675,000,000원(부가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7. 9. 25.부터 2018. 7. 31.에 걸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6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호로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9. 12. 27. B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쟁점공사 중 B의 설계변경 등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내역 및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은데, B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파라펫 데크플레이트 추가공사(순번 4번) 공사대금 25,74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하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 위 추가공사의 대금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 인한 증액	206,265,219
2	설계변경에 의한 현장 수정비	143,934,991
3	설계변경에 의한 공장 수정비	223,220,087
4	파라펫 데크플레이트 추가공사	25,740,000
5	믹싱룸 추가공사	32,428,000
합계	631,588,297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인 나머지 공사대금 605,848,297원(= 206,265,219원 + 143,934,991원 + 223,220,087원 + 32,428,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사.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채권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 13, 14, 15호증,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추가공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며, 그 정산금액은 470,000,000원(부가세 별도), 즉 517,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517,000,000원이다.

가.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다.

1) B이 2018. 3. 7. 원고에게 보낸 '원가분석최종본'에는 이 사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공사비(지급예정금액) 450,000,000원(부가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B 현장소장 F이 2018. 5. 15. B 총괄책임자 G에게 보낸 '이 사건 전체공사 예상손익자료'에는 '외주공사 설계변경 및 미발주공사 진행 예정현황'이라는 표제하에 원고의 업체명과 함께 '도급설계변경분: 추가공사비 450,000,000원, 산소믹싱룸/봄베이실 25,000,000원'이라는 공사대금(부가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다.

3) B이 2018. 5. 22.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전체공사 예상손익자료'에는 외주비 항목에 원고의 업체명과 함께 '475,000,000원(부가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B이 2018. 11. 15.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쟁점공사 정산(예정) 내역'에는 '1. 철골공사, 2. 데크플레이트공사, 3. 산소 믹싱룸&봄베이실'과 관련하여 당초의 공사비보다 470,000,000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음이 표시되어 있다.

나. 한편, B이 2019. 1. 24.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전체공사 원가자료'에는 이 사건 쟁점공사 최초공사대금 외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약 두달 전인 2018. 11. 15.까지만 해도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내역서를 보내며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위 2019. 1. 24.자 자료를 받은 후 2019.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 미반영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1. 24.자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B은 2018. 6. 25. 발주처인 D과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하여 추가 공사대금 1,7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추가공사내역에는 '14. 철골부재 변경 616,018,349원, 16. 산소 믹싱룸, 봄베이실 60,463,858원'이 포함(을 제5호증 참조)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추가공사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B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이유로 발주처인 D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추가공사 계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정작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는 해당 부분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전체공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826,834,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위 손실금 중 원고의 지분율 1/2에 해당하는 413,41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DOCUMENT: 3공장 산소발생기 덕심통점이 큰압기를 장비가대 폐수탱크 도급/정산대비(이미지 생략)

갑 제9, 11, 13호증,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전체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826,834,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1) 피고는 이 사건 전체공사의 간접비 항목에 본사관리비 544,452,080원을 포함시켰으나 위 돈이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2) B은 위 본사관리비와 유사한 명목인 현장관리비 147,568,000원, 본사집행비 531,470,000원에 관하여 이미 간접비 항목에 포함시켜 놓았다.
- 3) B이 원고에게 보낸 2018. 3. 7.자 원가분석최종본 및 2018. 5. 22.자 이 사건 전체공사 예상손익자료에는 간접비 항목에 모두 본사관리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1) 4) 본사집행비에는 B 부사장 G에게 지급된 PM수수료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G은 2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50,000,000을 PM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실제로 위 비용 상당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반소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종록

판사차은주

판사최광진

1) 2018. 5. 22.자 이 사건 전체공사 예상손익자료 중 분석 항목에 '본사관리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보아 세부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결국 본사집행비 항목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본사관리비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본사집행비와 별도의 항목으로서 본사관리비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